

# 대학자체평가 규정

제정 2017. 12. 26      개정 2018. 10. 29

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4조의4(대학자체평가)에 대한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) 자체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‘자체평가’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)에 따른 우리 대학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 또는 영역별 점검·분석·평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제1항의 영역별 점검·분석·평정에는 대학의 중·장기 발전계획(특성화)에 대한 성과평가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4조(평가시기) 대학운업을 위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, 영역별 자체평가는 필요시 1년마다 1회를 실시 할 수 있다. 다만,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경동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자체평가위원회

- 제5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자체평가위원회
  2. 자체평가연구위원회
- 제6조(구성)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교학부총장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산학취업처장, 산학협력단장, 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나머지 위원은 교내외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내 실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8. 10. 29.)
-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회의 시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임기)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8조(위원회의 기능) ①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자체평가위원회

- 가.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 계획 확정
- 나. 자체평가서(안) 심의 및 확정
- 다. 자체평가연구위원회 평가사항의 심의
- 라. 기타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후 총장에게 자문

2. 자체평가연구위원회

- 가.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 계획(안) 수립
- 나. 평가의 계획수립, 자료수집 및 평가표 작성
- 다. 자체평가서(안) 작성
- 라. 사업비의 운영 검토, 조직 및 제도 개선
- 마. 자체평가 이의사항 처리
- 바. 자체평가위원회에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
- 사. 기타 자체평가를 위한 제반업무의 수행

② 대학의 중·장기 발전계획(특성화)에 대한 성과평가는 대학발전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자체평가 방법 및 활용은 제3장을 준용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.

### 제3장 자체평가 방법 및 활용

제10조(평가지표 및 방법) 자체평가 지표 및 방법은 자체평가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평가절차) ① 기획조정처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각 관련부서에서는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이 통보되면 자료 제출 등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 처우) 평가위원, 평가자문관, 평가담당자의 업무수행을 담당할 참여 위원에 대하여는 개인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 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자체평가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 후 본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대학의 특성화 정책 반영, 교육 단위 및 행정 부서의 선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지침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대학자체평가위원회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.